

양계경리실무



송 재 만

〈소신종계원 경리계장〉

IV. 감가상각과 세무처리

● 감가상각의 효과

일반적으로 감가 상각을 하게되면 그만큼의 금기의 비용이 증가하므로 아울러 그만큼의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게되며 만약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제감가액 이상으로 과대상각 하게되면 고정자산은 장부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적게되며 당기이익금이 감추어 지게 된다. 또한 과대상각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현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있어서는 상각완료 되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게된다. 이것을 부기상에 있어서는 비밀자산이라 일컬으며 이와같이 비밀자산의 형태로 감추어진 이익금을 비밀적립금이라 하는것이다.

이러한 비밀자산이나 비밀적립금은 장부기록을 정확성이나 인간의 정의감등으로 생각하여 보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으나 회계의 전통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는 소위 자산의 내용이 충실했라는 점에서 환영되고 있다 하겠다. 이와같이 감가상각은 상각액의 대소에 의하여 당기의 비용이 증감하며 그만큼 당기의 이익금이 증감하게 하는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은 금기에 있어서 과다상각

을 하였거나 과소상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상각고정자산은 조만기에 전액이 상각되는 것이므로 상각 전기간에 걸쳐서 본다면 전체의 기업손익에 영향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특정한 기간을 시점으로하여 비교하여 본다면 그기간에 과대상각하느냐 차기에 과대상각 하느냐에 따라 기간 손익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이다. 감가상각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 (1) 고정자산을 유동화 하며.
- (2) 원가계산을 정확히 할수 있으며
- (3) 기간 손익계산을 정확히 하는데 있다.

● 감가상각의 3가지 요점

고정자산의 사용에 따르는 가격의 저감에 있어 문제점은 감가상각이라 하겠다. 이러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요점은 다음과 같은 3 가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취득가격
- (2) 내용년수
- (3) 잔존가격

이와같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데는 위의 3 가지 요소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보면

1) 취득원가

일반적으로 기초 가격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취득원가는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율의 산정상 그기준이 될 금액이며 또한 상각할 최고한도액인 것이다. 상각할 자산에 대한 취득가격은 세법상 다음과같이 규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댓가여기에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나)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다) 앞서 이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 그리고 고정자산 구입후 또는 제작후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지급한 수선비는 원가로서 산입할것인가 비용으로서 처리되어야 할것인가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선비는 대체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대수선비 또는 개량비는 원가에서 산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세법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는 수선비라는 손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적지출에 의한 수선비는 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동법 시행규칙 제33조)

2) 잔존가격

잔존가격이라 함은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에 도달하여 불용 멸실되었을 때 그 고정자산을 매각처분하여 얻을수 있는 추정가격을 말하며 이러한 잔존가격은 구제가격과 폐물 가격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즉 구제가격이라 함은 고정자산이 감소하여 고유의 목적을 다할수없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다른 용도에 그냥 이용할수 있을 경우를 말하며 폐물가격이라 함은 전혀 타에 이용할 수 없고 폐각처분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잔존가격은 개개의 자산에 따라 일정치 아니하며 폐기처분 할때까지 잘알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급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세법은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영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원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

법 시행령 제55조)

3) 내용년수

취득한 고정자산이 보통의 상태 조건상 폐물로서 처분폐각될때까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산기간 또는 추정연한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년수에 대하여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7조) 내용년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나 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것을 잔존내용년수로 하도록 세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감가상각 내용년수의 결정시 유의점

가) 동일한 고정자산이 그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에 공용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용도마다 판이한 내용년수가 정하여져 있을때에는 다음의 비율을 확인하여 비율이 큰편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의 비율

3. 사용정도의 "

4. 사용회수의 "

나) 전용 자산에 있어 전용후의 내용년수 결정
감가상각 자산이 종래 사용되어온 용도로부터 다른용도에 전용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전용후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년수는 전용후의 용도에 대하여 정하여진 내용의 년수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자본적 지출 부분의 내용년수의 결정

감가상각에 있어 자본적지출 부분의 내용년수는 그 자본적 지출이 추가된것과의 자산의 내용년수에 의하게 된다.

라) 대여하고 있는 자산의 내용년수 결정
대여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년수는 차주(借主)의 용도등에 의하여 하나나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야 한다.

마) 내용년수의 일부나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의 내용년수.

이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내용년수에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한것을 내용년수로 하여야 한다. 이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때에는 그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바) 자산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의 내용년수 이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잔존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한것을 잔존년수로하는 것이다.

1년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세무 전략적인 면에서의 검토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년수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세무 계획으로서 전략적인 메스를 가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음 2 가지 점에 연구하자면

1) 일괄내용년수의 의사의 결정

2) 세무조사에 있어서 전정 정결 될지도 모르는 “가구 및 비품”에 적용되는 내용년수의 결정

가) 개별 내용년수가 일괄내용 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일괄 내용년수에 의하면 유리하다.

나) 개별내용년수에 의하기보다 일괄 내용년수에 의하는 편이 계산은 월등히 간단하다.

1) 건물

건물은 토지에 직접 건설된 건축물 및 그 일부인 영구적 부속설비를 말하며 점포, 영업소, 사무소, 공장, 창고, 기숙사, 사택, 그밖의 부속건물 외에 건물의 일부가 되는 난방설비, 냉방설비, 조명설비, 통풍배관 설비등의 부속설비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건물에 있어서도 영업용, 투자용, 전매용의 3종이 있으나 유형고정자산으로서는 영업용에 한한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원가라 함은 이것을 구입 또는 건축해서 영업용에 제공할때 까지의 제비용을 포함하며 이것은 그 취득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건물을 타에서 구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입가격에 중개인 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등의 부대적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기장되며 사용이전에 발생한 수선비, 개조비 등은 기본적지출로서 건물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다. 청부업자에게 건축을 청부시킨 경우와 자기 인원 및 설비를 이용하여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지급한 선지급금 그밖의 지출은 건물의 낙성일까지 일시적으로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여 두었다가 낙성후에 그 계정의 차변 잔액을 건물 계정에 대체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건물신축 이전에 있었던 구 건물 그밖의 공작물의 철거 이전비는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그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총당금의 누계액을 건물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있어서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계산 방법으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1항 1호)

정율법이나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기본준칙(법 21-2-10-7)

정부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당국의 철거명령에 의하여 타의로 철거된 기존건물의 장부가격은 기타 사유로인한 건물의 멸실로서 특별 상각하고 철거비는 잡손실로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기존건물의 노폐등 사유로 인하여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장부가격은 부대비용으로서 신축건물가격에 가산한다.

2) 구축물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충칭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주로 보조적 작업을 하는것을 말한다.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액을 구축물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세법상 감가상각의 계산방법으로서 정율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1-1)

3) 차량, 운반구

차량운반구는 기관차, 전차, 화차등의 철도 차량, 자동차, 예인차, 3륜차, 자전차, 리아카 등의 차량과 탄차, 도로코, 손차등의 육상운반구 등을 말한다. 다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것은 이것을 경비취급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차량과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액은 차량과 운반구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세법상 감가상각의 계산법은 정율, 정액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4) 공구, 기구, 비품

일반적으로 주로 기계또는 장치에는 붙어 있고 또 손으로 공장의 현장작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것으로서 예를들면 조각공구, 수레나 힘마등의 일반공구가 이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구는 주로 그 자신이 어떤 일정한 기능을 갖고 공장의 현장작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전력계, 전압계, 온도계, 속도계, 가스검정기 등의 계기류 및 전지, 실험구, 소화기, 계산기등의 일반기구를 포함 하는것이다. 비품은 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작업에 사용되지 않은것이며 책상, 의자, 사무용품, 편의점, 보전위안기, 잡품등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공구, 기구와 비품은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또한 상당가격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정자산에 처리되지만 그 이하의 것은 평의상 유동자산으로 하며 만약 극히 소액인 경우, 설령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장치

기계는 동력을 받아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것이며 예를들면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작업기계 등을 말하며 장치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분해, 변형, 변질, 운동시키기 위한 설비와 전기설비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연화장치, 화학장치, 냉동장치등을 말한다.

그러나 기계와 장치의 구별은 명확하지 못하므로 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계와 장치는 일괄일체가되어 활동하는 것이므로 기계와 장치를 합쳐서 기계장치란 과목으로 함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컨베어 호이스트, 기증기등의 운반설비는 기계장치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계산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을 하게되며 이경우 사업년도 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법법 시행령 제58조)

이 경우에 있어 월수계산은 즉 월수는 달리에 따라 계산하며 사업년도 개시일에 속하는 월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법 시행령 제58조)

●자산재평가 후의 감가상각

자산 재평가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감가상각과는 일절 관련을 끊고 자산재 평가액을 새로운 취득 가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것이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자산재평가후 잔존내용년수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그 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경과년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년수를 가산한것을 내용년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령 59조) 이 경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가 없는것으로 한다.

예) 1) 법정 내용년수 10년

2) 6년 경과후 재평가

3) 신 내용년수?

$$(10\text{년} - 6\text{년}) + (6\text{년} \times \frac{40}{100}) = 6.4\text{년}$$

= 6년

즉 내용년수는 6년이다.

● 고정자산의 세부계획과 요점

고정자산에 관한 세무계획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겠다.

- (1) 구입가격은 적정 시가에 의하였는가.
- (2) 적정시가에 비하여 저락한 것은 없는가.
- (3) 정적시가에 비하여 고액의 것은 없는가.
- (4) 취득 가격은 최대로 싸게 계상(결정)되었다.
- (5) 취득의 원인에 대하여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가.
- (6) 무수익 자산이 되는 일은 없는가.
- (7)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법정 상각 한도액 까지 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처리 하였는가.
- (8) 감가상각시 내용년수의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점의 유무.
- (9) 취득가격의 10%에 달하기 까지 상각비의 계산이 행하여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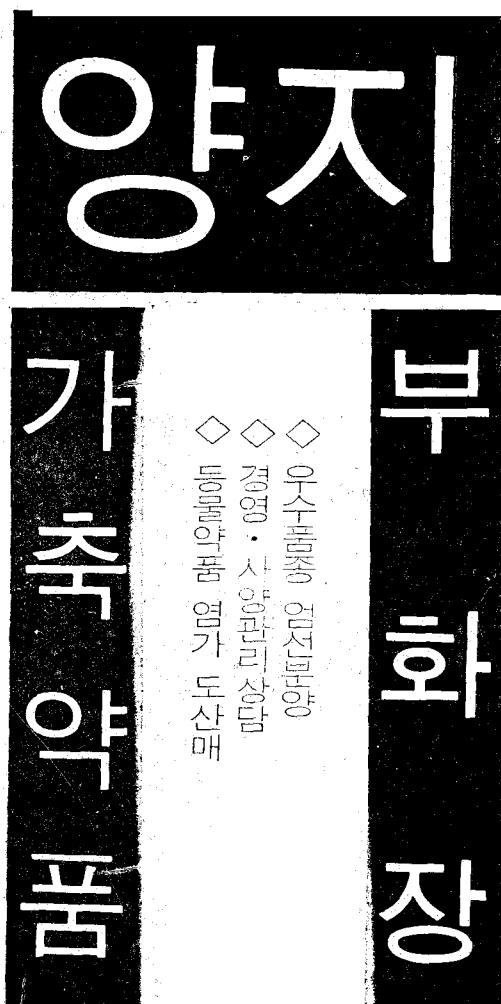
<양계 상식>

◎ 계란에 왜 오일, 코-팅을 하나?

달걀의 신선도 (新鮮度)를 유지하기 위하여 無味無臭의 광물성 유지 (油脂)를 빌라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난각표면의 구멍을 막게되어 炭酸개스의 발산을 적게 해준다.

◎ 血斑과 肉斑은 어떤 것인가?

이는 달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혈관의 일부가 터져서 섞였거나 수란판의 혼란에 의하여 생긴다. 이것은 종류나 사료, 종계의 건강상태등이 관계되지만 血斑 출혈률은 많아서 1%정도이다. 계란 처리과정에서 이런 계란은 치우지만 잘못되어 시장에 나가는 수도 있다. 이것을 먹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다.



네오크로 } 고농도분말
판 옥시 }

네오크로 } 산란강화제
판 옥시 }

서울·성동구 천호동 413
전화: 56-1938, 55-2208